



사단법인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Korean Women Visual Designers' Association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KIDP) 408호
(우)463-828

Tel 031-788-7085
Fax 02-795-7066
Web www.kwvd.or.kr

문서번호 : 2020-공-01

발송일자 : 2020. 3. 23

발 신 : 사)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수 신 : 회원제위

제 목 : 긴급 임시총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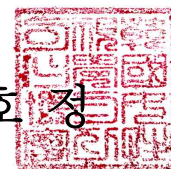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정기총회 이후 협회사무국에서는 행정적 업무인
수인계를 마치고 ‘디자인으로 포용하는 사회’를 모토로
소통하는 문화의 한 축으로써의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제16대 회장단이 꾸려졌습니다. 선배 회원님들의 열정과 공적을 이어 받아 한국의 여성문화를 대표
하는 하나의 협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기부수혜가능 협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관 수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고문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
합니다. 코로나19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 정관 수정에 대한 긴급 임시총회를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
니다. 또한 2020년 KWVD 정기전은 한전아트센터의 국제초대전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관
수정과 정기전 관련 사항은 첨부자료(동의서 포함)를 확인하시고 서면동의서는 3월23일부터 3월27
일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제16대 회장단은 협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정기전에는 반갑게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사)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장 남 호 정



붙임1. 공지사항

1. 제16대 회장단

회 장 : 남호정 | 부 회 장 : 김현정 | 사무총장 : 김진경 | 재무이사 : 최진경
사무간사 : 주자희 | 국제이사 : 이재선, 이지현 | 교육이사 : 박정아, 손애경
전시이사 : 강재신, 김명미, 김지선, 안현미, 엄은영 | 홍보이사 : 진진아, 최인숙

2. 2020KWVD 국제초대전 (주제 설명 및 공간 구성은 추후 공지)

- 1) 주제 : Intercommunication (스마트한 의사소통)
- 2) 일시 : 2020년 7월 10일(금) - 7월 17일(금) (11일 오픈 예정)
- 3) 장소 : 한전아트센터 기획전시실 (200평형)

붙임2.

1. 이사회 안건 (이하 붙임)

안건 1	협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하여 정관의 부분수정과 긴급임시총회 개최 승인의 건
안건 2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임시총회를 서면총회로 승인의 건 (관련:코로나19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주무관의 안내-2020. 3.17)

2. 정관 수정부분

변경 전	변경 후
<p>제1장 총 칙</p> <p>제1조 (명칭)</p> <p>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WOMAN VISUAL DESIGNERS' ASSOCIATION(약칭 K.W.V.D)라 칭한다.</p>	<p>제1장 총 칙</p> <p>제1조 (명칭)</p> <p>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WOMEN VISUAL DESIGNERS' ASSOCIATION(약칭 KWVD)라 칭한다.</p>
<p>제2조 (목적)</p> <p>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의 작품활동을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여성시각디자이너의 권익을 신장시키며 그 능력을 사회 발전에 활용할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조 (목적)</p> <p>본회는 정보교류를 통한 작품과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회원의 자질 고양과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의 권익 신장으로 역량 있는 여성시각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디자인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3조 (소재지)</p> <p>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고 각 도에 이사를 둘 수 있다.</p>	<p>제3조 (소재지)</p> <p>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또는 지방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지부를 둘 수 있다.</p>
<p>제4조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의 행사 2. 회원의 작품향상을 위한 각종의 행사 3. 여성시각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수립 4. 해외 여성시각디자이너 및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협조 5. 협회활동관련 출판사업 6. 목적사업에 수반하는 수익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p>제4조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작품발표회 개최 2. 디자인관련 연구, 교육, 세미나, 워크샵 등 각종 행사 3. 여성시각디자이너의 창작활동 보호 및 장려를 위한 사업 4. 작품 발표집 및 연구성과 등의 출판사업 5.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p>※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6장 재산 및 회계</p> <p>제31조 (입회비 및 정기회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회원은 소정의 정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25년 연속회원이면서 65세 이상은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p>제6장 재산 및 회계</p> <p>제31조 (입회비 및 정기회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회원은 소정의 정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30년 연속회원이면서 70세 이상은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 본 자료는 메일과 문자로도 발송하겠습니다. 동의서에 사인하시고 메일이나 문자로 (김진경 사무총장 010-5800-1113 또는 010-7411-7085) 회신 부탁드립니다.

붙임3.

서면 동의서

번호	안건	동의 여부 (가/부)	의견
1	협회의 위상과 발전을 위한 정관 제1장 1조, 2조, 3조, 4조와 제6장 31조 부분 수정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란에 의견 작성

2020년 3월 일

성명 : (인)

사단법인 한국여성시각디자이너협회 회장 귀하